

2015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 내지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23조에 의거
“2015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3. 3.

'15년 자격명칭 변경

※ 기존 자격소지자는
2015년 4월초 이후부터 개정된
자격등급으로 재발급 가능

종 전	개 정	비 고
1급 경기지도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명칭 변경
2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규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 자격 취득 절차는 모든 등급 동일함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자격검정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기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중앙대학교,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용인대학교,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백석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필수 확인 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신청, 응시 기타 서류발급 등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sports.or.kr>

전문스포츠지도사

1 응시자격

□ 공통사항: 만18세 이상인 사람

구분	응시요건	취득절차				적용시한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1급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 2급 경기지도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체육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경기경력을 보유한 사람 체육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2.31까지 (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19.12.31까지) *체육분야 석사: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 석사과정에서 재학중인 사람은 '17.12.31까지 (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표이면서 해당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250)			
2급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 경기경력 2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해당종목 경기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해당종목에 한함) 국가대표선수(전·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2.31까지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배구,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종목에 한함)의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40)			
추가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예정증명서 제출시 2016.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2 자격종목

구분	자격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방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

3 필기검정과정

□ 필기검정과목 및 일정

○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구분	필기검정	필기 과목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1급 전문	일반과정	4.1~4.8	4.1~4.10	4.25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2급 전문	일반과정	4.1~4.8	4.1~4.10	4.25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5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중 5과목 선택)

4 실기 및 구술검정과정

□ 실기 및 구술검정 일정

자격구분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실기 및 구술검정			
		접수	검정료 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2급 전문	일반과정 특별과정 추가취득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가원(태권도)			
		5.20~5.27	5.20~5.29	6.2~6.26	6.30

5 연수과정

□ 연수일정

자격구분	연수기관	연수				합격자발표
		연수등록	연수비납부	연수	현장실습	
1급 전문	국민체육진흥공단	5.28~6.3	5.28~6.5	6.13~9.30	6.13~11.20	12.1
2급 전문	한국체육대 동아대 충남대 조선대 국가원(태권도)	7.6~7.10	7.6~7.13	7.18~8.9	7.18~9.30	10.15

생활스포츠지도사

1 응시자격

□ 공통사항: 만18세 이상인 사람

구분	응시요건	취득절차				적용시한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1급 생활	일반과정	• 해당종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 (120)	특례
		•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종목 선수경력을 보유한 사람 •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교(일반 4년제) 또는 체육관련 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종목 선수경력 또는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	○ (120)	
	특별과정	•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0)	
		• 국가대표선수(전·현)				○ (4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배구,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종목에 한함)의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40)	
		• 해당종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			○		
추가취득	• 해당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	○		○	○ (40)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2급 생활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과정	• 해당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			○	○ (40)	
	추가취득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2 자격종목

구분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54개 종목) ※ '15년 추가된 종목: 궁도 등 12개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키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유,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 종목추가(12):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명칭변경: 사이클→자전거, 산악→등산, 수중→스키스쿠버, 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3 필기검정과정

□ 필기검정과목 및 일정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구분	접수	필기검정			합격자발표	필기 과목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1급 생활 일반과정 특별과정	7.8~7.14	7.8~7.16	8.1	8.20	• 필기(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2급 생활 일반과정	4.13~4.21	4.13~4.23	5.16	6.5	• 필기(5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중 5과목 선택)	

4 실기 및 구술검정과정

□ 실기 및 구술검정 일정

자격구분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실기 및 구술검정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1급 생활 일반과정 특별과정 추가취득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9.1~9.7	9.1~9.9	9.12~9.18	9.25
2급 생활 일반과정 특별과정 추가취득		6.10~6.16	6.10~6.18	6.27~7.12	7.17

5 연수과정

□ 연수일정

자격구분	연수기관	연수				합격자발표
		연수등록	연수비납부	연수	현장실습	
1급 생활 일반과정 특별과정	경북대, 원광대	10.1~10.7	10.1~10.12	10.17~11.29	10.17~12.20	12.28
2급 생활 일반과정 특별과정	경기대 등 21개 연수원	7.20~7.24	7.20~7.27	8.1~8.30	8.1~10.23	11.2

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1 응시자격

□ 공통사항: 만18세 이상인 사람

구분	응시요건	취득절차				적용시한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유소년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과정	•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40)	
		• 해당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			○	○ (40)	
	추가취득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의 스포츠 강사		○	○		• '16.12.31까지 특례
유소년	추가취득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노인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과정	• 해당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			○	○ (40)	
	추가취득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2 자격종목

구분	자격종목
유소년스포츠 (57개 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54개) +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노인스포츠 (55개 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54개) + 그라운드 골프

3 필기검정과정

□ 필기검정과목 및 일정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구분		필기검정				필기 과목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유소년	일반과정	4.13~4.21	4.13~4.23	5.16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5과목) ※ 필수(1): 유아체육론 ※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노인	일반과정	4.13~4.21	4.13~4.23	5.16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5과목) ※ 필수(1): 노인체육론 ※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4 실기 및 구술검정과정

□ 실기 및 구술검정 일정

자격구분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실기 및 구술검정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검정내용
유소년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6.10~6.16	6.10~6.18	6.27~7.12	7.17	• 유소년 발육·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노인		6.10~6.16	6.10~6.18	6.27~7.12	7.17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5 연수과정

□ 연수일정

자격구분	연수기관	연수				합격자발표
		연수등록	연수비납부	연수	현장실습	
유소년	중앙대, 경남대, 호서대, 광주대, 가톨릭관동대	7.20~7.24	7.20~7.27	8.1~8.30	8.1~10.23	11.2
노인	연세대, 이화여대, 신라대, 대전대, 목포대, 호남대, 가톨릭관동대	7.20~7.24	7.20~7.27	8.1~8.30	8.1~10.23	11.2

건강운동관리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응시자격

□ 공통사항: 만18세 이상인 사람

구분	응시요건	취득절차				적용시한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	○	○	○ (200)		
	특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종목 선수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소지자로서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31까지 (15.1.10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특례
1급 장애인	일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종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 (250)		
	특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선수로서 해당종목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250)		
2급 장애인	일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학급,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포함)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40)		
		장애인국제대회 국가대표선수				○	○ (40)	
	추가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특례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예정증명서 제출시 2016.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3년 경력요건에 따라 '19년부터 시행

2 자격종목

구분	자격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4개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컬링

3 필기검정과정

□ 필기검정과목 및 일정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구분	일반과정	필기검정				필기 과목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6.3~6.12	6.3~6.15	6.27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8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2급 장애인	일반과정	4.13~4.21	4.13~4.23	5.16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5과목) ※ 필수(1): 특수체육론 ※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4 실기 및 구술검정과정

□ 실기(구술)검정 일정

자격구분	일반과정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실기 및 구술검정				검정내용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국민체육진흥공단	7.22~7.28	7.22~7.30	8.8~8.16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2급 장애인	일반과정 특별과정 추가취득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6.10~6.16	6.10~6.18	6.27~7.12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5 연수과정

□ 연수일정

자격구분	일반과정	연수기관	연수				합격자발표
			연수등록	연수비납부	연수	현장실습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연세대, 계명대, 순천향대, 조선대	8.31~9.4	8.31~9.7	9.12~11.8	9.12~12.13	12.18
2급 장애인	일반과정 특별과정	웅인대, 대구대, 백석대, 원광대	7.20~7.24	7.20~7.27	8.1~8.30	8.1~10.23	11.2

자격정의

구분	정 의
스포츠지도사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 ※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사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노인스포츠지도사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 일부면제

◎ 학교체육교사

구분	응시 요건	취득 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2급 전문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 경력 3년 이상		○	○	
1급 생활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40
2급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	○ 40
유소년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	○	○ 40

◎ 국가대표선수

구분	응시 요건	취득 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1급 전문	•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 후 경기지도 3년 이상				○ 250
2급 전문	•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	○	
1급 생활			-		○ 40
1급 장애인	•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 250
2급 장애인			-	○	○ 40

◎ 프로스포츠 선수

- 해당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 3년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선수에 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아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구분	취득 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2급 전문			○	○ 40
1급 생활			○	○ 40

◎ 동일한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 1급 전문(볼링)이 1급 생활(볼링) 취득)

기보유 자격	취득 희망 자격	취득 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1급 전문	1급 생활			○	
	유소년/노인			○	○ 40
2급 전문	1급 생활	○		○	○ 40
	유소년/노인			○	○ 40
1·2급 생활	유소년/노인			○	○ 40
유소년	2급 생활/노인			○	○ 40
노인	2급 생활/유소년			○	○ 40

◎ 체육지도자가 동급의 다른 종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 1급 생활(볼링)이 1급 생활(수영) 취득)

구분	취득 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2급 전문				
1급·2급 생활				
2급 장애인		○	○	
유소년				
노인				

특례 및 경과조치

◎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16.12.31'까지('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19.12.31'까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응시 가능
-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경기경력을 보유한 사람
 - 체육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 체육분야 석사: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관련 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은 '17.12.31'까지('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응시 가능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17.12.31'('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시 가능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종목 선수경력을 보유한 사람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종목 선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교(일반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선수경력을 보유한 사람
 - 대학교(일반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체육분야 학사: '15.1.1 당시 대학교(학사)의 체육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은 '18.12.31'까지('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1.12.31'까지) 응시 가능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선수경력을 보유한 사람 또는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12.31'까지('15.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건강운동관리사 응시 가능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16.12.31'까지 필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16.12.31'까지 필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자격검정료 및 연수비

(단위: 원)

자격구분		필기검정료	실기 및 구술 검정료	연수비	자격증발급(제)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8,000	30,000	500,000	1,000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50,000	1,000
	특별과정	18,000	30,000	150,000	1,00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건강운동관리사		18,000	30,000	400,000	1,000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5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 자격증 발급(제) 배송료(택배비)는 본인 부담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실기·구술시험 응시 제한사항 완화
 - 기존 태권도, 검도, 유도, 우슈, 공수도, 태권 종목에 대하여 해당 경기단체가 발행한 단증, 사범증 보유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였던 자격요건 제한 폐지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 요건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예정증명서 제출시 2016.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 필기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공지사항,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자격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 (태권도 제외)	02) 970-0018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국기원(태권도)	02) 3469-0168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 제외)	02) 2152-7315	
	국기원 (태권도)	02) 3469-0168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 제외)	070-7422-1004	
	국기원(태권도)	02) 3469-0168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02) 970-9667	

연수기관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1): 국민체육진흥공단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5)

연수원	한국체대	국기원	충남대	조선대	동아대
연락처	02-410-6666	02-3469-0168	042-821-6441	062-230-7404	051-200-6351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2): 경북대(053-950-6401), 원광대(063-850-6381)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21)

연수원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에리카(ERICA)
연락처	031-249-9065	031-201-3740	031-8020-2800	032-835-8570	02-820-6478	031-400-5727
연수원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
연락처	055-249-6380~1	055-772-2290	053-580-6211	051-629-5633	054-820-7380	053-810-1146~7
연수원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군산대	전남대
연락처	043-840-3900	042-821-6403	043-261-3263	041-540-5860	063-469-4276	062-530-2550
연수원	전북대	강릉원주대	제주대			
연락처	063-270-3590	033-640-2622	064-754-3580			

□ 유소년스포츠지도사연수원(5)

연수원	중앙대	경남대	호서대	광주대	가톨릭관동대
연락처	02-820-6478	055-249-6380~1	041-540-5869	062-670-2209	033-649-7778

□ 노인스포츠지도사연수원(7)

연수원	연세대	이화여대	신라대	대전대	목포대	호남대	가톨릭관동대
연락처	02-2123-6582	02-3277-2558	051-999-5574	042-280-2910/2924	061-450-6095	062-940-3706	033-649-7958

□ 건강운동관리사연수원(4)

연수원	연세대	계명대	순천향대	조선대
연락처	02-2123-6189	053-580-6211	041-534-3974	062-230-7404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연수원(4)

연수원	용인대	대구대	백석대	원광대
연락처	031-8020-2859	053-850-6080	041-550-2988	063-850-6201

※ 연수기관 지정일: 2015. 1. 1.

- 기존 경기지도사연수원 및 생활체육지도사연수원은 2014.12.31.자로 운영 만료

□ 홈페이지 안내

-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www.insports.or.kr) : 원서접수, 연수등록, 결과발표 등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연락처

- ▶ 기타 자격검정관련 세부사항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 ▶ 대표 안내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02) 970-9600